

스포츠지원센터운영에관한규정

2024.05.21. 제정

<스포츠지원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스포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학교 운동부 대상 스포츠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 우수 선수 육성 및 국가 대표 배출 확대,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교내·외 스포츠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2조(조직) ① 지원센터에 스포츠지원위원회를 둔다.

② 지원센터에 사격부, 볼링부, 태권도부, 축구부, 요트부 등의 운동부를 둔다.

제3조(구성) 지원센터에는 학생처장, 센터장, 감독, 코치 및 직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학생처장) 학생처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5조(센터장)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일반 행정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6조(감독, 코치) ① 각 운동부에는 감독 또는 코치를 둔다.

② 감독과 코치는 학생처장의 제청으로 본교 교원 및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며, 매년 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감독 및 코치는 임용시 제출한 윤리서약서[별지서식 1호]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본교 교원 및 직원 인사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임무

제7조(학생처장의 임무) 학생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스포츠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할한다.

② 지원센터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장 명에 의하여 시행한다.

③ 각 운동부의 감독, 코치를 감독하고 선수들을 총괄 지휘 감독한다.

④ 지원센터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⑤ 기타 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제8조(센터장의 임무) 지원센터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각 운동부 선수의 훈련 및 대회참가 관리
2. 지원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3. 지원센터 스포츠지원위원회 관련 업무
4. 학생 선수의 국내·외 경기 출전과 관리에 관련한 업무
5. 지원센터 활동 관련 홍보
6. 학생 선수의 포상과 징계
7. 운동부 숙소의 관리 운영
8. 체육행사 주최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9조(감독, 코치의 임무) 각 감독, 코치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각 운동부별 우수선수 발굴
2. 수업 및 각종 시험 훈련에 따른 연간계획 수립
3. 운동부에 대한 훈련 출결 사항 확인
4. 운동경기 및 훈련에 따른 연간계획 수립
5. 각종 운동경기 실적에 따른 평가회의의 평가서 기록 작성
6. 각 운동부에 관한 제반 사항 보고
7. 기타 학생처장이 총괄하는 사항

제4장 스포츠지원위원회

제10조(목적) 지원센터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학생처장(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 사무처장, 보건·복지교육대학장, Do-ing대학장, 스포츠재활학과장, K-sports태권도학과장, 축구학과장, 스포츠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 또는 조교로 한다.

제5장 운동부 수업 및 훈련

제16조(운동부 수업) 운동부의 수업은 매 학기 15주로 하고 매일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운동부 훈련) ① 특수한 경우와 사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중 전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훈련 시간은 수업 종료 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습장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출석인정요청) 각 운동부의 감독은 국내·외의 중요한 훈련 및 경기(대회)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스포츠지원센터에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한다. 스포츠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교수에게 이를 통보하며, 해당 교수는 과제물을 부과하여 수업이나 평가를 대처할 수 있다.

제6장 운동부 선발 및 활동

제19조(운동부 선발) 운동부 선발은 운동부(사격부, 볼링부, 태권도부, 축구부, 요트부 등)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0조(숙소생활) 운동부 학생의 숙소 생활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운동부 등록) 운동부는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22조(선수 진료) 부상 선수의 진료는 훈련 및 시합 시에 발생 사항에 대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진료비 부담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3조(포상) 운동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훈련에 열성적이고 팀의 사기 진작과 학교 명예를 선양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① 운동부로서 태만 불성실하여 발전의 여지가 없고 선수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시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 혜택을 축소 시키거나 소속팀에서 제명 시킬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운동부를 이탈하거나 자의로 휴학 및 자진 입대한 선수는 퇴학 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③ 운동부는 재학 중 취업, 실업 및 프로팀과의 계약은 금지한다. 단, 졸업반(7학기이상 이수한 자 포함)에 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④ 운동부는 학군단 무관후보생에 입단할 수 없다.

⑤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준하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제25조(선수 수칙 서약) 위 제19조에 의하여 선발된 선수는 [별지서식 2호]서약서를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회계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운동부의 예산 및 결산은 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운동부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과 지출은 학교 본부 회계를 통하여 지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윤리서약서

소속: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동명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동명대학교의 설립 이념과 교육목표를 준수하며, 스포츠를 통하여 학원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국가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래의 행동강령을 지킬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학교에서 집행되는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행동강령 준수사항>

1. 학교법인 정관 및 대학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직위를 남용하여 선발 부정 및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형을 통한 금품수수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
3. 선수들을 훈련 시킴에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구타나 가혹행위(비인 격인 대우 및 언어 폭력 포함)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동명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2호]

서 약 서

학 과:
학 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동명대학교 운동부 학생으로서 체육부 운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반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숙소 퇴소 및 운동부 장학금 지급 중지는 물론 기지급된 장학금을 반환 조치한다.

1. 운동부로 입학한 후, 휴학 또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자
2. 운동부 발전에 누를 끼친 자
3. 운동부 숙소 무단 이탈자
4. 선수로서의 기량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5. 운동부 숙소 내에서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자
 - 가. 흡연, 음주, 도박, 동료와의 싸움
 - 나. 시간 약속 불이행
 - 다. 팀 기술 및 제도에 대한 정보 누출
 - 라. 하급생 체벌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
6. 훈련 및 경기(대회)에서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7. 실업 및 프로팀으로 이적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스포츠지원센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과 학부모 임의로 실업 및 프로팀으로의 이적이나 취업을 결정할 때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학교는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 대학에서 기지급된 운동부 장학금, 출전비, 개인장비 구매비, 숙식비 등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학생 (서명)
보호자 (서명)

동명대학교 학생처장 귀하